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
------	----

제출연월일 : 2011.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공포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2010년 9월 30일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지침 하달에 따라 하수도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함(신설)
-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배수설비 설치완료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건물신축 등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 발생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징수
 - ※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대비(5.5톤 기준 24.09% ⇒ 별지 설명자료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 협의

소비자정책심의회 : 2010. 12. 29. 완료

라. 입법예고 : 2011. 5. 23. ~ 2011. 6. 12.(20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평창군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 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평창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소속 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창군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³/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m³/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에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1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 이하일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18조(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대행자는 주민의 분노 등의 수집·운반·처리민원 요청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분노수집·운반 등의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노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노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지정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분노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노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노(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노의 수집·운반을 분노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시군내에서 배출되는 분노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 수집·운반 및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	구분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 (원)
가 정 용		680	1 ~ 10	160
			11 ~ 20	176
			21 ~ 30	194
			31 ~ 40	213
			41 ~ 50	234
			51이상	258
업 무 용		1,978	1 ~ 20	232
			21 ~ 50	255
			51 ~ 100	281
			101 ~ 300	309
			301이상	339
영 업 용		4,522	1 ~ 30	360
			31 ~ 50	396
			51 ~ 100	436
			101이상	479
목 탕 용		24,770	1 ~ 200	224
			201 ~ 300	247
			301 ~ 500	271
			501이상	298
전용공업용				585

-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 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4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오수량 : m³/일)

구 분	최초 행정행 위시 오수발 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07.9.28.)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 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0조제1항)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계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25,880원	0원	25,88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700원	0원	1,700원

- ※ “수집·운반” 은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 “처리” 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2조제2항)

업종	구분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일 반 용	20	20
	영 업 용	20	20
	육 탕 용	20	20
	산 업 용	20	2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8조제1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평창군 읍·면		번지(통 반)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관계 법령 발췌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4.5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4.5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6.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9.6.26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 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5.5.31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삭제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2.4, 2005.5.31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⑦ 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2009.5.27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17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평창군 분뇨 수집 · 운반수수료 인상 설명자료

평창군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인상 설명자료

분뇨수집·운반은 하수도법에 의한 법적의무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성격이 공공요금에 가까워 1996.11.26 이후 현재까지 인상을 제한하여 왔으나, 소비자 물가·평균임금·경유가 등의 연평균 인상율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물량감소 등으로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토대로 검토한 사항임.

■ 용역실시 개요

- 용역명 : 평창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 용역
- 용역비 : 금구백팔십육만원정(금9,860,000원)
- 진단기간 : 2010. 6. 9 ~ 2010. 7. 29(45일)
- 진단기관 : (재)한국산업발전연구원

■ 용역 결과

- **현행 평창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 현행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비고
		계	분뇨수집·운반요금	처리요금	
분뇨수집·운반	1리터당	14원	12원	2원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1리터당	15원	13원	2원	

● 평창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수지분석
(현 행)

구분	부과 기준	수 수 료(원)		수수료 (대당)		연간 운반 대수	톤 수별 수입금 (년간)	총 수입금				
		요금구분	금액									
분 노	1ℓ	계	14	5톤	70,000	94.4	6,608,000	154,754,000				
		수집·운반	12									
		처리 요금	2	6톤	84,000	21.5	1,806,000					
정화조	1ℓ	계	15						5톤	75,000	900.6	67,545,000
		수집·운반	13									
		처리 요금	2	6톤	90,000	875.5	78,795,000					
운행 경비	순수입금	업체수	업체별수입금 (년)					월 수입금	비 고			
101,768,787	52,985,213	4	13,246,303	1,103,858								

(2010년 물가지수 기준)

구 분	부과 기준	수 수 료(원)		수수료 (대당)		연간 운반 대수	톤 수별 수입금 (년간)	총 수입금				
		요금구분	금액									
분 노	1ℓ	계	22	5톤	110,000	94.4	10,384,000	247,366,000				
		수집·운반	20									
		처리 요금	2	6톤	132,000	21.5	2,838,000					
정화조	1ℓ	계	24						5톤	120,000	900.6	108,072,000
		수집·운반	22									
		처리 요금	2	6톤	144,000	875.5	126,072,000					
운행 경비	순수입금	업체수	업체별수입금 (년)					월 수입금	비 고			
101,768,787	145,597,213	4	36,399.303	3,033,275	분 노 57.1% 정화조 60.0%							

※ 필요경비 산출 내역

구 분	운 영 경 비				
	계	유 류 비	유 지 비	공 과 금	처 리 비
필요경비	101,768,787	59,918,890	17,775,417	3,366,480	20,708,000

■ **평창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

● 분뇨 및 개인하수도시설 청소는 하수도법에 의한 법적의무사항으로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성격이 공공요금에 가까워 이로 인하여 1996.11. 26 요금조정 후 현재까지 유지
 ⇒ 분뇨(ℓ 당) : 14원, 정화조 15원(처리수수료 포함)

●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월평균 수입은 1,104천원으로서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당요금 징수
 ⇒ 현재 분뇨수거량 1,200 ℓ 미만 30원, 5,000 ℓ 이상 20원으로 조례에 맞지 않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

● 1996. 11. 26부터 소비자 물가·평균임금·경유가 등의 연평균 인상을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물량감소(전년 대비 △6.1%) 등으로 인한 요금의 현실화 필요

- 연평균 인상율(2001년~2009년)

소비자 물가	평균임금	경유가	비 고
3.6%	5.5%	10%	자료출처 : 통계청 및 한국석유공사

■ 분뇨수집 · 운반수수료 인상 주요내용

● 평창군 분뇨수집 · 운반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과체제 개편

○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동일요금 책정

- 현재 분뇨수집 · 운반 수수료가 분뇨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이원화 되어 있으나, 작업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고 또한 분뇨수거율이 5.79%로 미미함으로서 동일요금으로 책정 검토

○ 기본요금 제도 도입

- 소규모 분뇨 및 정화조를 수집 · 운반할 경우 이동거리 등으로 필요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기본요금제도 도입 검토
<기준거리 19.07km x km당 기준 운행비용 465.89원 = 8,880원>
- 1,000ℓ 이하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1,000ℓ 이상은 ℓ 요금 적용

○ 분뇨수집 · 운반수수료 인상

- 그간 정부에서 공공요금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1996.11월 요금 조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분뇨 14원, 정화조 15원)
- 용역결과 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일정 수입이 발생되어야 하나, 소비자 물가 · 평균임금 · 경유가 등의 인상률과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한 물량감소 등으로 수입 감소
- 따라서 업체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뇨수집 · 운반수수료 인상안 검토

※ 소비자 정책심의회 결정(안) : 별첨 참조

● 소비자 정책심의회 결정 인상안 (나안)

- 수혜자와 업체간 소규모 간이화장실 및 정화조오니 수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수수료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요금 신설
 - 가안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15원을 17원으로 인상하고 기본요금 8,880원을 적용하는 안(37.43%)
 - 나안 : 수집·운반 수수료 15원을 17원으로 인상과 기본요금 8,880원 적용하고 처리수수료를 감면하는 안(24.09%)
 - 다안 : 수집·운반 수수료 15원을 19원으로 인상과 기본요금 8,880원을 적용하는 안(37.43%)(제 2안의 감면된 처리수수료 2원을 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

구 분				심 의 안		
				가	나	다
수수료	분뇨 및 정화조	기본요금 (1,000ℓ 까지)	계	27,880	25,880	27,880
			수집·운반	17,000	17,000	19,000
			기본요금	8,880	8,880	8,880
			처리비	2,000	-	-
		1,000ℓ 초과시 매 100ℓ 마다	계	1,900	1,700	1,900
			수집·운반	1,700	1,700	1,900
			처리비	200	-	-
			인상시 수입금(5.5톤 대당)	113,380	102,380	113,380
기존 수입금(5.5톤 대당)	82,500	82,500	82,500			
인 상 율(5.5톤 대당)	37.43%	24.09%	37.43%			
업체별 연평균 수입금	53,380,630	48,203,630	53,380,630			
업체별 연평균 소요경비	25,442,197	20,265,197	20,265,197			
업체별 연평균 순 수입금	27,938,433	27,938,433	33,115,433			
월평균 순수입금	2,328,203	2,328,203	2,759,619			

<장·단점>

- 기본요금 책정으로 소규모 간이화장실 및 정화조오니 수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수수료 관련 분쟁 예방
- 가안에 비하여 업체의 수입은 동일하나 주민(수혜자)의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군 세외수입은 감소

<별첨 1>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대비표

현행		개정						
구분		수수료 (원)			수수료 (원)			
분뇨 수집· 운반	1ℓ당	계	수집·운 반요금	처리 요금	계	수집· 운반	기본 요금	처리 요금
		15	13	2	25.88	17	8.88	-

※ 1,000ℓ 초과 시 매 100ℓ 마다 1,700원 추가

<별첨 2>

시·군별 분뇨 및 정화조 수거 수수료 현황

시·군	수 거 료(ℓ / 원)						개 정 일	비고
	분 뇨			정 화 조				
	계	수거요금	처리수수료	계	수거요금	처리수수료		
춘천시	22	20	2	18	16	2	2009.09.30	
원주시	15	14	1	18	17	1	2010.06.29	
강릉시	14	12	2	18	16	2	2006.01.02	
동해시	14	12	2	18	16	2	2008.01.10	
태백시	14	12	2	17	15	2	1999.11.17	
속초시	12	10	2	15	13	2	2004.11.22	
삼척시	14	12.5	1.5	18	16.5	1.5	1995.11.22	
홍천군	16	14	2	20	18	2	2007.04.12	
횡성군	20	17	3	20	17	3	2000.10.30	
영월군	12	10	2	14	12	2	2000.01.13	
평창군	14	12	2	15	13	2	1996.11.26	
정선군	14	12	2	15	13	2	1997.11.12	
철원군	12.4	10.4	2	14	12	2	1998.11.24	
화천군	17	17	-	20	20	-	2000.12.27	
양구군	14	12	2	17	15	2	1997.12.14	
				16	14	2		
인제군	13	11	1	16	14	2	1995.08.14	
고성군	15	13	2	17	15	2	1996.06.30	
				15	13	2		
양양군	12	10	2	15	13	2	2007.12.31	

※ 시 단위 지역은 최근 조례 개정시 18원, 군 단위 지역은 20원 선으로 개정 추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18원,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20원)